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기존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개정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제3,4조)

나.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1항, 제10조제1항)

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제12조~14조)

라. 옥외집회(공개장소에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 관련 공직선거법 반영(제16조)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제8조제2항)

바. 주민투표법 근거조항 변경 및 별지 서식 수정(제18조)

사. 부칙 신설(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제5조~제28조), 공직선거법(제102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8. 11. ~ 8. 31.)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를 “두고 있고,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 중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전자투표 · 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으며,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심의회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으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항에 따른”을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를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옥외집회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

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 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참고 자치법규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자치구 및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 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 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자치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 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left: 200px;">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는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 ----- ----- 두고 있고,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는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 외국인은 -----.</p>
<p>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p><삭 제></p>
<p>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p>	<p>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p>

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 구분하여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

사본을 자치구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2.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
-----.

<삭 제>

<삭 제>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전자투표 · 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으며,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

<신 설>

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

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 청구인대표자 증
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 청구인대표자 증
명서를 -----.

②----- 같
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

---. ---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
에 의한 -----

-----.

③-----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
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

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의 옥외집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호별방문
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신 설>

제17조 (주민투표청구서등) ① 법

-----.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과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옥외집회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및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공표·공고 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슬기(2133-5839)